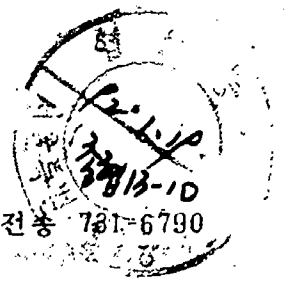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전화 (02) 731-6391/4 / 전송 731-6790

문서번호 주개30321- 55

시행일자 1992.1.16

(경유)

수신 각 안 참조

참조

취급	시 장	
보류	[Handwritten Signature]	
주요 사항		
주요 담당과장	[Handwritten Initials]	법무담당관 [Handwritten Initials]
개량 담당	[Handwritten Initials]	(고시안심사) 협조통제관 [Handwritten Initials]
기안 구 현 모		지적과장 [Handwritten Initials]
		협조

제목 주택개량제개발구역 단순면적 정정등 지적승인고시 (봉천3.4구역)

(제 1 안)

수신 내부결재

1. 건설부고시 제470 (73.12.1)호로 지정되고 같은고시 제247 (90.5.1)호로 구역추가된 봉천3.4구역에 대하여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산정한 바 당초면적과 상이하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단순면적정정하고

2. 도시계획법 제13조 제2항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등의 고시)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에 의거 별첨고시안 및 도면과 같이 승인하고 고시하고자 합니다.

첨부 1. 고시안 1부

2. 지적승인고시 도면 1부. 끝.

(제 2 안)

수신 총무처장관

제목 관보제재의뢰

1. 주택개량제개발 봉천3.4구역에 대한 별첨 고시문 사본과 같이 고시하였기 관보제재의뢰하오니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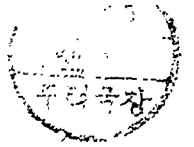
가. 제재구분 : 고시

나. 제재건명 : 주택개량제개발 봉천3.4구역 지적승인

다. 법적근거 : 도시계획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첨부 고시문 사본 2부. 끝.

# 서울특별시 장



(재 3 안)

수신 건설부장관

참조 주택개발과장

제목 주택개량재개발구역 단순면적 정정및 지적승인고시 보고

1. 건설부고시 제470 (73.12.1)호로 구역지정되고 같은고시 제247 (90.5.1)호로 구역추가된 봉천3.4구역에 대하여 지적공부에 의거 면적을 산정한 바 당초면적과 상이하여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권한의 위임)의 규정에 의거 단순면적정정하고,

2. 도시계획법 제13조 제2항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등의 고시)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에 의거 별첨고시문 사본및 도서와 같이 지적승인 고시하였기 보고합니다.

첨부 1. 고시문 사본 1부

2. 지적승인 고시 도면 1부. 끝.

## 서울특별시

(재 4 안)

수신 관악구청장

참조 주택과장

제목 주택개량재개발구역 단순면적 정정및 지적승인고시 (봉천3.4구역)

1. 건설부고시 제470 (73.12.1)호로 구역지정되고 같은고시 제247(90.5.1)호로 구역추가된 봉천3.4구역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권한의 위임)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면적정정하고, 별첨고시문 사본및 도면과 같이 지적승인 고시하였기 통보하니

2.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인에게 보이고 도시계획업무처리에 착오없도록 할 것이며 지적승인 고시 내용을 관련부서에 통보토록 할 것.

첨부 1. 고시문 사본 3부

2. 지적변경승인 도면 3부. 끝.

## 서울특별시

(제 5 안)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주택개량재개발구역 단순면적정정및 지적승인 홍보

1. 건설부고시 제470(73.12.1)호로 구역지정되고 같은고시 제247(90.5.1)호로 구역추가된 봉천3.4구역에 대하여 지적공부에 의거 면적을 산정한 바, 당초면적과 상이하여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권한의 위임)의 규정에 의거 단순면적정정 하고

2. 도시계획법 제13조 제2항(도시계획에 관한 지적등의 고시)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에 의거 별첨 고시안및 도서와 같이 승인하고 고시하였기 홍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고시문 사본및 도면 각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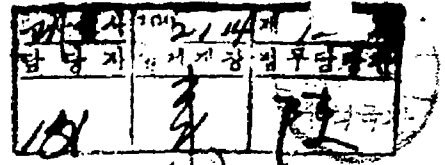
# 주 택 개 량 과 장

수신처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지적과, 공원과

수신처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지적과  
공원과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 16 호

관악구 관악동 2번지 일대



주택개발제한구역의 공원변경(단순면적정정포함)에 따른 지적승인 고시

1. 건설부고시 제470(90.5.1)호로 구역지정되고 같은고시 제247(90.5.1)호로 구역추가된 봉천3.4주택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지적공부에 의거 면적을 산정한 바, 당초면적과 상이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권한의 위임)의 규정에 의거 단순면적 정정하고, 같은고시 제247(90.5.1)호로 변경된 재개발 구역 및 상도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도시계획에 관한 지적등의 고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권한의 위임)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같은법시행령 제8조(고시) 및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개발과와 관악구청 주택과, 도시정비과에 비치 하여 일반인에게 보충한다.

1992.

서울특별시장

가. 재개발구역 단순면적정정 및 지적승인 조서

구역명	위 치	면 적 (m <sup>2</sup> )			비 고
		기 정	변 정	변경우	
봉천3 구역	관악구 봉천동 2번지 일대	137,525	증) 122,995	260,520	단순면적정정 (증)5,078m <sup>2</sup> 포함
봉천4 구역	관악구 봉천동 2번지 일대	243,010	증) 12,150	255,160	단순면적정정 (증)19,839m <sup>2</sup>



나.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 지적 승인 조서

공원명	구역명	위 치	면 적 (m <sup>2</sup>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상도근린 공원	봉천3 구역	관악구 봉천동 산101번지일대	495,392	감) 56,920	438,472	
	봉천4 구역	관악구 봉천동 산102번지일대	438,472	감) 36,937	401,535	

다. 지적고지도면 : 서울특별시청 주택국 주택개발과와 관악구청 주택과,  
도시정비과 비치도면과 같음

